마포구 어린이 ·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16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(위생과)
- 나. 회부일자 :2023. 5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6. 16.)

상정. 심사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위생과장

가. 제출이유

어린이 및 노인·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. 사업개요
 - 설치근거
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 - ·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위탁시설 : 마포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 - 위탁사무

- 어린이 ·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·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
- · 어린이 · 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* 교육 실시
 - * (어린이) 어린이, 조리원, 원장, 교사, 부모 (사회복지) 입소자, 조리원, 시설장, 돌봄종사자, 가족 또는 보호자
- 어린이 · 사회복지 연령별 · 대상별 · 질환별 식단 · 조리안내서 제공
- · 어린이 ·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베공
- · 어린이 ·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· 영양관리 실태조사
- 위탁기간 : 2023. 7. 1. ~ 2025. 12. 31. (2년6개월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주체 : 법령에 따른 기존수탁기관에서 통합 운영
- 관리대상
 -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: 204개소
 -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시설 : 15개소
- 소요예산 :
 - ·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: 525,000천원[국(30%)·시(35%)·구비(35%)]
 - ·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: 50,000천원[국(30%)·시(35%)·구비(35%)]

(2)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급식소 규모 및 대상 연령에 맞는 식단 및 영양·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 함.
- 상시적으로 급식소의 실태조사 등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따른, 전담 관리가 요구 됨.
-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(대학교, 단체 등)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(3). 참고사항

(가). 관계법령

- 1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같은 법 시행령
- 2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(나).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어린이급식관리시설	사회복지급식관리시설			
계	575백만원	525백만원	50백만원			
산출근거	인건비 67%, 운영비 27%, 국내여비 등 6%					
재 원	국비30%, 시비35%, 구비35%					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제출 배경

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 사업을 마포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여 마포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○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위탁은 「노인・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・운영 중인구청장은 어린이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음.

<표 1. 마포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현황>

(단위: 개소)

구 분		합계			
下世	20인 이하	21-49인	50-99인	업계	
총 계	85	45	74	204	
어린이집	73	33	72	178	
유치원	1	-	2	3	
기타(지역아동센터,아동복지시설)	11	12	-	23	

(단위: 개소)

구분	합계	노인복지시설			장애인복지시설	
		소계	노인의료 복지시설	재가노인 복지시설	소계	장애인주거시설
합계	15	11	1	10	4	4
직접조리(직영)	9	7	1	6	2	2
직접조리(위탁)	3	3	-	3	-	-
외부조리	1	1	-	1	-	-
가정형 시설	2	-	-	-	2	2

마포구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204개소이며 영양사가 없는 50
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시설은 15개소임.

다. 종합 의견

- 2020년 9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급식소 203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.
- 최근 「노인・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면서 노인・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소들의 지원을 위한 어린이・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
- 이는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[관계법령]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